

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

1. 유의사항

-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
- 전체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188개 직종의 가중평균임
- 『※』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함
- 『—』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에는 미계산함
-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: 통계청 공표승인일(02.12.16)

-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. 다만,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·공표한 경우에는

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제34005호로 승인받은 지정통계로 '00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사자수 20인~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산업중분류별, 종업원규모별 1,0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.

-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협수당, 생산장려수당,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
-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1일 8시간, 월급제인 경우 1월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
- 평균 조사노임(일급)산출은 조사대상업체가 2002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임

2. 평균 조사노임(일급) 적용요령

가.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(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)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,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.

당해 가격

-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

-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.

-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

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도서지역(제주도를 포함한다)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공사의 경우

나. 원가계산을 할 때 노무비 적용 기준

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

(회계예규 2200. 04-105-7, 2001. 2. 10)

제9조(노무비)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, 간접노무비를 말한다.

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%, 제수당, 퇴직급여총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.

1. 기본급(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·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·고시하는 단위당가

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·기족수당·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)

2. 제수당(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·야간수당·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)

3. 상여금

4. 퇴직급여총당금

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,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,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, 상여금, 퇴직급여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, 작업시간,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.

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(간접노무비)을 곱하여 계산한다.

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

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

다. 시중노임 적용 요령시 참고 사항(재경부 회계 45101-45, '95. 1. 13에서 발췌)

- 시중노임 적용시점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.
-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,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.
-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임.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, 상여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은 이 시중노임단기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『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』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.
- 조사기관이 조사·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·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.
- 조사기관이 조사·공표한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연도(또는 시기)의 경우에는 전후 연도(또는 시기)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연도(또는 시기)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.

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

(단위 : 원)

일년 번호	직종명	2001.9월 조사노임	2002.9월 조사노임	직 종 해 설
1	기계설계사	37,556	43,791	-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
2	회로설계사	43,016	47,149	-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
3	목형공	29,698	35,347	-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
4	조선화학공※	29,271	33,276	- 펄프를 분쇄·증해·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
5	일반화학공	32,970	36,786	- 화공약품의 저마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
6	사자공	28,111	33,742	- 사자(샌드페이퍼, 물페이퍼)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
7	사출공	28,193	29,283	- 수지제품 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
8	성형공	27,282	30,578	- 수지제품 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
9	압출공	29,699	30,452	- 수지제품 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
10	배합공	32,864	33,113	- 수지제품등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
11	품질관리공	31,932	33,984	-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
12	품질관리사	41,725	46,489	-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
13	기계정비공	34,903	38,503	-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
14	목재포장공	32,564	33,639	-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
15	물품포장공	25,389	27,283	-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
16	제품출하공	28,826	33,030	-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
17	스캔기능공	37,199	38,866	- 사진이나 그림 인쇄시 색상(필름)을 분리하는 사람
18	교정사	34,822	38,866	-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·확인작업을 하는 사람
19	옵셋인쇄공	36,711	42,019	-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
20	지류제단공	32,345	36,292	-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
21	연포장재 접합공	31,421	33,011	-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
22	제지공	26,276	30,679	-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
23	염단공	25,182	29,556	-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